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9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나경원
박성훈 · 김예지 · 김기현
한지아 · 김용태 · 이진숙
임이자 · 강명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.

최근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·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별도로 관리·정비하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27조의2 신설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산불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불취약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산불취약지역의 관리·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취약지역의 지정,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7조의2(산불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불취약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산불취약지역의 관리·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취약지역의 지정,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</u></p>

한다.